

일자리안정지원금 채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(을) 공시송달 공고

일자리안정지원금 채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‘재산압류통지서(을)’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8. 04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 : 일자리안정지원금 채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08. 04. ~ 2026. 08. 18.(15일간)
5. 일자리안정자금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징수 담당자(Tel. 031-259-021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공시송달대상자 명단						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번호)	소재지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압류재산	송달불능사유
사**요양원**점 (장*우)	608-96-107**	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*로 2* 831-*, *01호	재산압류통지서	일자리안정자금 채납액 (3,278,370원/2020년)으로 인해 차량 압류하였음을 통지	2010년식 BMW320d (차량번호0*어033*)	폐문부재 등

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2026. 8. 4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

